

# 2009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

과 목 : 대지계획

제2과제(대지분석·대지조닝)

배 점 : 35/100

## 제목 : 종교시설 신축대지의 최대 건축가능영역

### 1. 과제개요

대지현황도에 제시된 대지 A내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고자 한다.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건축가능영역을 구하시오.

### 2. 대지개요

- (1) 용도지역 : 제3종 일반주거지역(인접대지도 모두 동일한 용도지역)
- (2) 대지규모 : 대지현황도 참조(대지A영역)
- (3) 건폐율 : 60% 이하
- (4) 용적률 : 250% 이하

### 3. 계획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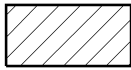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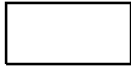
- (1)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은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.5배 이하로 한다. 단, 건축물 높이제한 산정을 위한 전면도로의 너비 기준은 각각 전면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.
- (2)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:
  - ① 높이 4m 이하 부분: 1m 이상
  - ② 높이 8m 이하 부분: 2m 이상
  - ③ 높이 8m 초과 부분: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/2 이상
- (3) 대지의 남동측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고,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의 지표면(EL+18m기준)으로부터 높이 7.5m인 곳에서 그은 사선(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비가 2:1)의 범위내에서 건축가능
- (4)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수직으로 하되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한다.
  - ① 8m 및 6m 도로: 5m 이상
  - ② 4m 도로: 3m 이상
  - ③ 인접대지경계선: 1.5m 이상

- (5) 계획대지내 보호수목은 대지현황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직사각형(20m×5m)의 보호수목 경계선을 설정, 건축한계선으로 하여 보호한다.
- (6) 대지현황도에 표시된 부분에 설치된 공개공지에 따라 다음 조건에 의한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.
  - ① 용적률: 해당 용적률의 1.2배 이하
  - ②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: 해당 높이 기준의 1.2배 이하
- (7) 계획대지는 절토 또는 성토를 하지 아니하며 지상1층 바닥레벨은 EL+15m로 한다.
- (8) 지상의 각층 층고는 4m로 한다.
- (9)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- (10) 별도의 옥탑층은 고려하지 않는다.

### 4. 도면작성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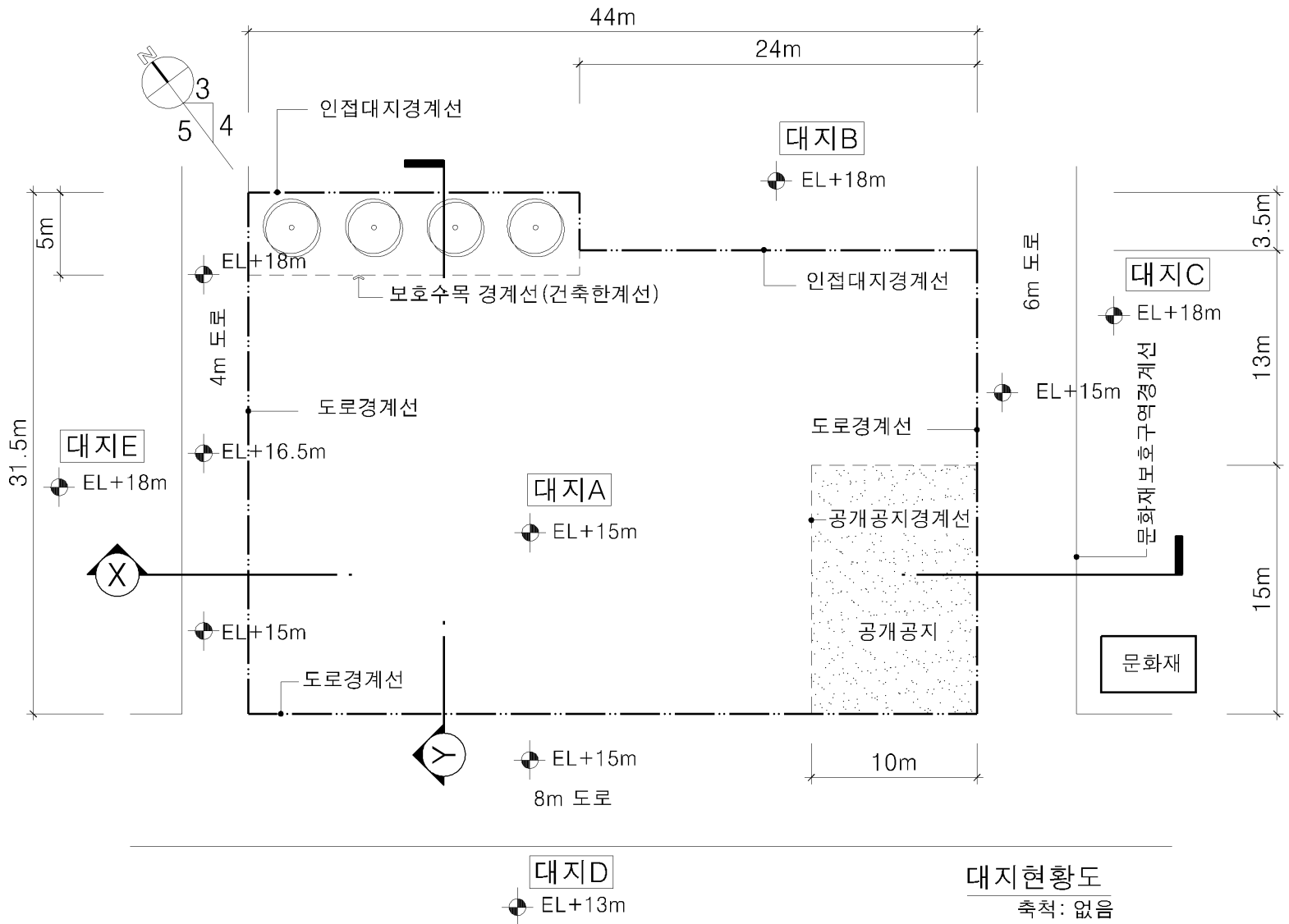
- (1) 최대 건축가능영역을 대지평면도 및 단면도에 작성하고 그 표현은 아래 <보기>와 같이 한다. (다만, 대지평면도에 중복된 층은 그 최상층만 표현)
- (2) 모든 제한선, 이격거리 및 치수를 대지평면도와 단면도에 기재하되 소수점이하는 소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로 표기
- (3) 단위 : m
- (4) 축척 : 1/300

<보 기>

홀 수 층	
짝 수 층	

### 5. 유의사항

- (1) 제도는 반드시 흑색연필로 한다.
- (2)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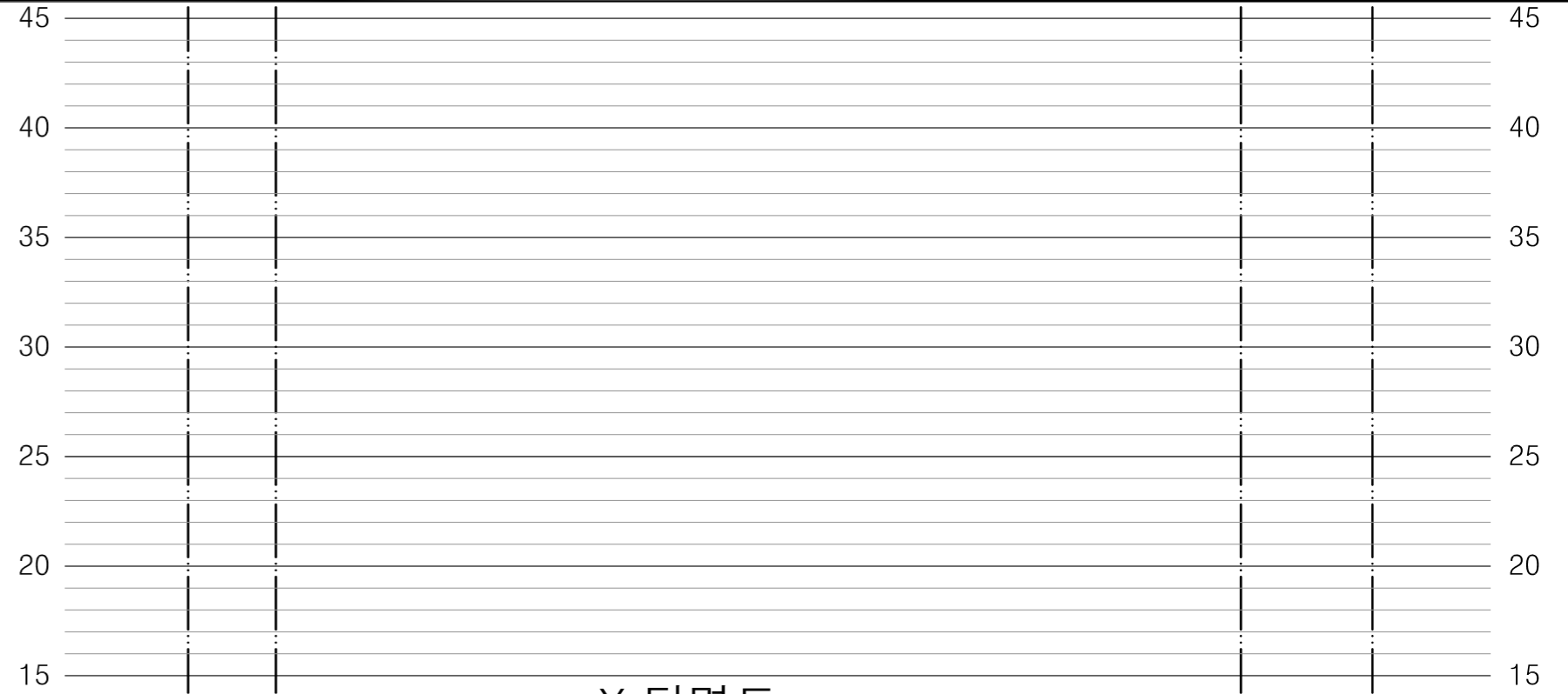
1

2009 건축사사무소  
 용기번호  
 성명  
 감독확인  
 (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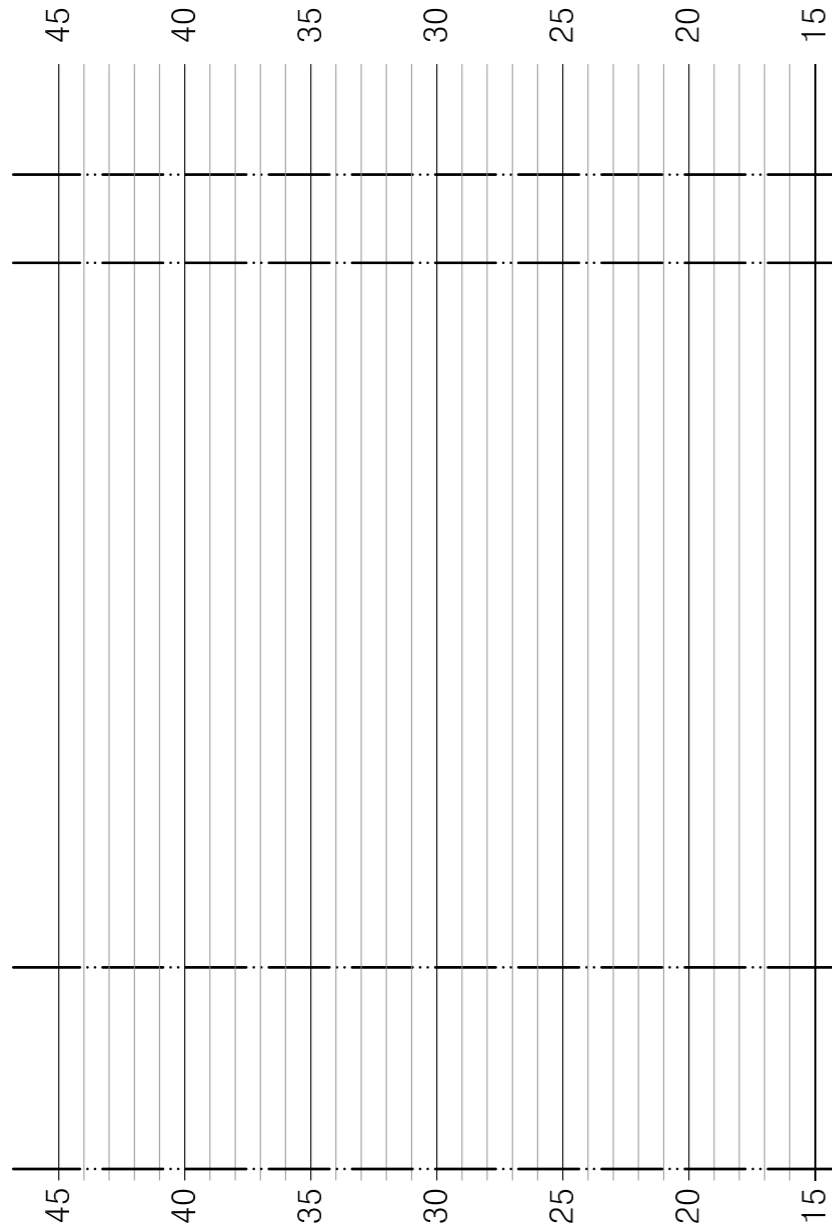
과목 : 대지계획

과제 : 대지분석 · 대지조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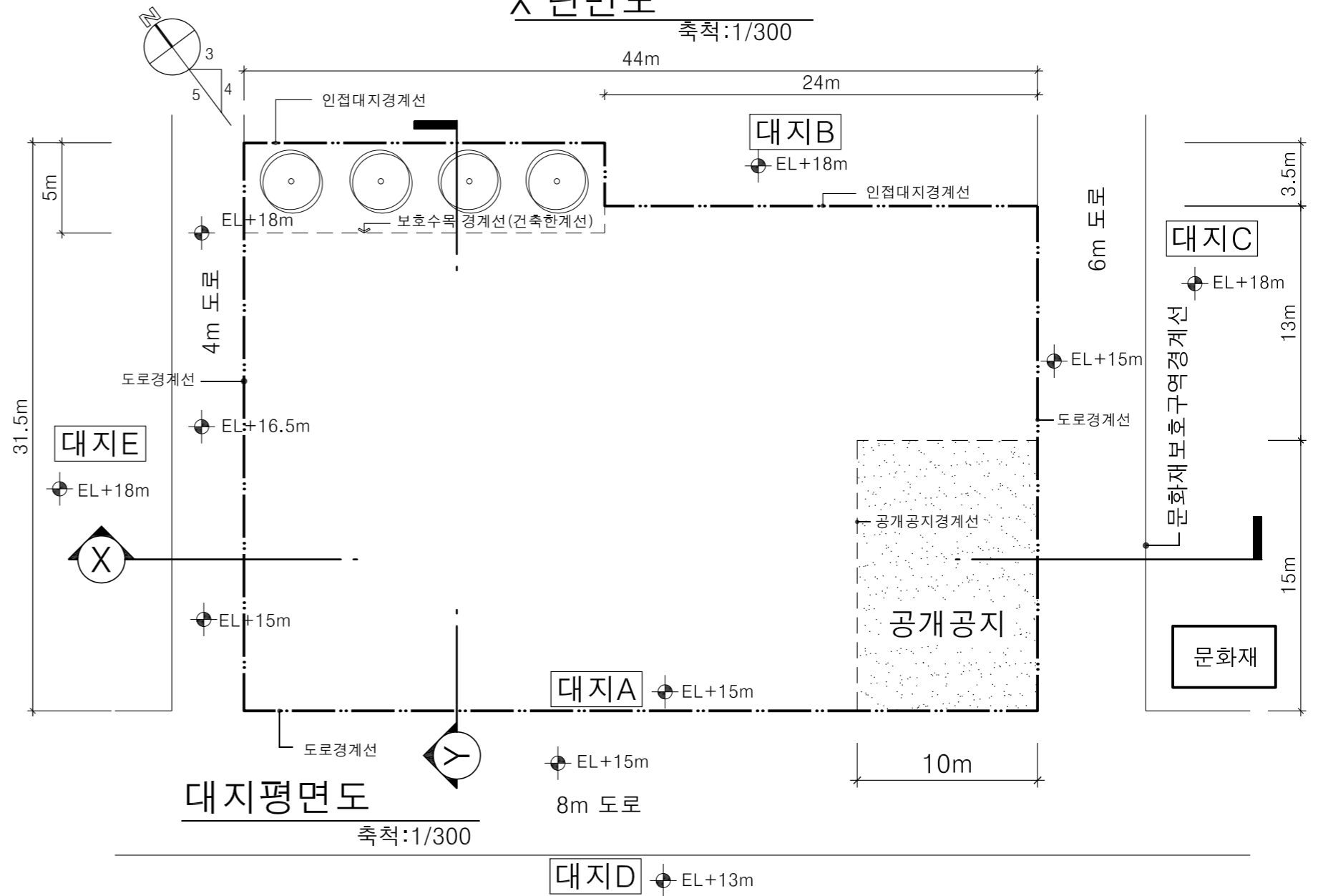
대한건축아카데미 + 엘손건축 www.ddhan.co.kr



X 단면도 축척:1/300



Y 단면도 축척:1/300



대지평면도 축척:1/300